아름다운 생복한 사 입

제2020-198호 2020년 10월 23일(금) 人



보

시 정 지 표

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

3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8 FAX) 659-5803

고 시

공 고

ㅇ 여수시 공고 제2020-2602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기 타

회				
람				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10. 23.

여 수 시 장

- 1. 공고내용 :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(붙임 참조)
- 2. 공고대상 : 1명 (붙임 참조)
- 3. 공고기간 : 2020. 10. 23. ~ 11. 6.(15일간)
- 4. 공고방법 :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5. 기타사항 :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T/F팀

(T. 061-659-564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 임 1. 공시송달 목록 1부.
 - 2.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각 1부.
 - 3. 이의신청서 1부. 끝.

공시송달 목록 공시송달 대상 비고 통지내용 공고기간 반송사유 연번 해당 부동산 이름 주소 확인서 발급신청 2020. 9. 28. ~ 폐문부재 최영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122, ***동 ****호 (호원동, 롯데아파트) 여수시 시전동 826번지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11, 30. (2개월간)

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(등기부동산)

	N 11 (H) 0 111)					
	성명(법인명)					
등기명의인 (또는 그 상속인)	최 기 용					
	주소					
٠ ٥٦ <i>١</i> /	여천군 쌍봉면 시전리 482번지					
	소재지	지목	면적			
부동산	여수시 시전동 826번지	전	744 m²			
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등록번호)				
	최 보 윤	1952. *. *.				
확인서	주소	취득연월일				
발급신청	여수시 시전5길 ** (신기동)	1974년 12월 27일				
내용						
	취득사유	공고기간				
	증여	2020. 9. 28. ~ 11. 30. (2개월)				

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(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)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.

2020년 9월 28일

여 수 시



이 의 신 청 서

• 색상이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발급일		처리기간	난 공고기간 만료일 부터 2개월
						- - - -
시치이	성명(법인명)			(주민)등록번호		
신청인	주소			전화번호		
부동산	소재지			지목		면적(m²)

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.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,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여 수 시 장 귀하

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개인정보의 수집 • 이용 • 제공 동의서

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)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지적·종합민원·시민봉사과 등) 신청서 작성 접 수 사 실 조 사 결 과 통 지 결재